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11-28
----------	-------

제출년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사업추진협의체, 도시디자인 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 관련 사항(제3조~제6조)

-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사업추진협의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제1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 및 자문대상,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소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3. 조례안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여부 : 해당없음
- 라. 협 의 : 감사담당관-3150(2011. 4.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 행정의 투명성 -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음 ○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결격 사유로 인한 해촉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제3항 : 위원의 해촉 규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 재량의 적정성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제6조(재정적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협의체 설치, 재정적 지원 등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 지원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재정적 지원의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 지원 기준 및 방법,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시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시행규칙 및 “경관협정추진 절차 및 단계별 주요내용 매뉴얼”을 우선 검토 시행 ○ 향후 우리구 개선 방향 정비 및 필요시 시행규칙 마련

5.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1. 3.24 ~ 2011. 4. 13(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4.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및 도시공간과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하거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마포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 경관협정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며, 위원은 구의원,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단 제4조제3항은 제외한다.
4.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별표의 심의대상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이외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한다.

③ 구청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표준형디자인 제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해촉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또는 자문에 조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자문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구청장이 경미하다고 판단·결정한 사항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심의대상 시설물

1. 도시구조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12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의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 고
공공건축물	가. 마포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과 설계공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 타

분 류	대 상 시 설 물	비 고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나. 광장 다.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별지 서식]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	0000조성사업	심의분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건축물		
신 청 부 서	0000과	담당팀장	(직·성명)		
		담당자	(직·성명)		
대상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00동 00번지				
사업개요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발주방법		설계비		
	예시				
	1. 가로환경개선사업 00m (연장 및 규모) (시설물현황 : 가로등0개, 휴지통0개, 펜스0m, 볼라드0개) 2. 시설물 설치공사 (총길이 0m, 높이0m, 수량0m, 재질, 색상 등 기재) 3.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지하0층, 지상0층, 연면적00, 건물용도) 등				
재 심	심의일자	0000. 00. 00.	심의차수	0000-0차	
	재심사유				
	반영여부				
설 계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TEL. H P.	FAX.
신청부서 의견 (디자인 방향 등)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및 마포구 세부디자인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첨부서류 : 인쇄물 10부 내외 (규격 : A4, 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 (PPT, PDF 변환파일 포함), 첨부내용 : 위치도, 사업개요, 현장 및 주변 전경사진, 디자인검토(안), 투시도, 배치도기본도면 등				